

2024. 9.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구이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용]



찾아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운영 개요

- 기간 : 2023. 12. 4. ~ 12. 29.
- 장소 : 수요 희망 경로당 6개소(칠암, 청명, 원두현, 모악호수, 원항가, 마음마을)
- 대상자 : 경로당 방문 마을 어르신
- 대상강좌 : 체조, 핸드폰 관리 사용법

1 선정 이유

- ☐ 농한기 중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어르신 역량강화 및 겨울철 활동증진에 노력하였음

2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 겨울철 어르신들의 활동 저하로 건강 악화 우려
- ☐ 어르신들의 휴대폰 이용 시 어려움을 고려한 프로그램 지속적 요구
- ☐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기한이 임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

3 개선된 점

- ☐ 농한기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활용 및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건강관리 효과 증대
- ☐ 교육적 측면의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이용효과 증대

4 기대 효과

- ☐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 향후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 시 다양성 제고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환수 00,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월액여비 부적정 지급내역(본업무 외)

(단위 : 일/원)

지급월	직급	성명	지급내역		적정지급액		과 다 지급액	비 고
			일수	금액	일수	금액		
		합 계					00,000	
000	0000	0 0	13	000,000	11	000,000	00,000	선거업무 2일
000	0000	000	13	000,000	12	000,000	00,000	선거업무 1일
000	0000	000	14	000,000	12	000,000	00,000	선거업무 2일
000	0000	000	13	000,000	12	000,000	00,000	선거업무 1일
000	0000	000	15	000,000	14	000,000	00,000	선거업무 1일

[지 적 내 용]

- 「완주군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에 출장일 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구이면에서는 상기내역과 같이 본업무 외의 출장일 수를 포함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과다지급한 월액여비 99,000원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추급 00,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이장수당 미지급현황

(단위 :원)

마을	성명	임명(사직)일	'23. 2월 수당 지급액	적 정 지급액	비고
000	000	'000000 (사직)	0	0	
	000	'000000 (임명)	0	00,000	지급누락

※ '0000분 이장수당 지급일 현재('000000) 000 마을 이장 공석으로 이장수당 미지급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8-2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7)에 따르면 이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하며 이장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따라서 구이면에서는 '23.2.분 이장수당 지급시 000 마을 이장이 공석으로 이장수당이 미 지급된 경우, 늦어도 '000분 이장수당 지급시 '000월분 이장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추가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지급 누락된 이장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급 부적정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환수 000,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급 부적정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지급연도	지급금액 (자부담포함)	비 고
000	00.00.00	2000	000천원	

[지 적 내 용]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 및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매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군에 시달하고, 군에서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등을 추진하고 읍면에서는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생생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접수 시 문화누리카드 등 수혜자인 경우 중복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생생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구이면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접수 시 유사 복지서비스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이 아닐 경우 제외대상으로 통보하거나 반려했어야 함에도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상기 내역과 같이 1명에게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중복 지원한 〇〇〇천원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주의”

[신분상 처분] 0000 00Q, 0000 00Q, 0000 00Q, 0000 00Q,
0000 00Q, 0000 0Q, 0000 000

[현 황]

○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현황

당직근무일	근무자		당직근무일지 작성여부	비 고
	직급	성명		
2023. 00. 00	0000	000	미작성	
2023. 00. 00	0000	000		
2023. 00. 00	0000	00		
2023. 00. 00	0000	000		
2023.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2024. 00. 00	0000	000		

[지 적 내 용]

○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제3항에 따르면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3항에 따르면 당직 책임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읍·면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당직근무일지

작성)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2023.09.08.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결과 알림”(당직 근무일지 미작성) 공문을 시달하여 “당직근무관련 규정 교육실시”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등 공직기강확립 철저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구이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종료 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및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당직근무관련 직원연찬(교육)을 실시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 (근무일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향후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건설공사 업체 선정시 공종면허 확인 소홀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훈계”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현 황]

○ 공사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금액 (천원)	계약업체	필요면허	보유면허
1	20〇〇년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도급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살내건축공사	-
2	20〇〇년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도급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살내건축공사	-

[지 적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발주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제25조(수급인등 의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구이면에서는 상기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15백만원 이상인 공사업체 선정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6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건설공사 제경비 계상 소홀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공사 현황

연번	공사명	총공사금액 (천 원)	계약금액 (도급,천 원)	공사기간	계약업체
1	2000 년 0000 000 0000000	00,000 도급 09,000	00,000	0000Q.0Q.00 ~0000Q.0Q.00	0000000
2	2000년 0000 000 0000000	00,000 도급 09,000	00,000	0000Q.0Q.00 ~0000Q.0Q.00	0000
3	0000 00 0000	00,000 도급 09,000 관급 9,000	00,000	0000Q.0Q.00 ~0000Q.0Q.00	000000

[지 적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7조, 시행령 제9조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70일 이내인 경우 사업이 끝나는 날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구이면에서는 상기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3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의 의무가입 대상인 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확인하지 않은(1, 2의 경우)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건설공사 추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확인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7

감사결과 조치계획

[제 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업무 소홀

[부서·기관명] 구이면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분상 처분] 없음

[현 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재진단기한	통보기준일 (재진단 3개월이전)	실제 통보일	통보일 준수여부
○○○	○○○○○○	2022.09.17	2022.06.17	2022.06.07	여
○○○	○○○○○○	2022.12.31	2022.09.30	2022.10.04	4일 지연
○○○	○○○○○○	2023.01.27	2022.10.27	2022.10.31	4일 지연
○○○	○○○○○○	2023.02.07	2022.11.07	2022.12.12	35일 지연
○○○	○○○○○○	2023.03.16	2022.12.16	2022.12.29	13일 지연
○○○	○○○○○○	2023.03.16	2022.12.16	2022.12.29	13일 지연
○○○	○○○○○○	2023.03.18	2022.12.18	2022.12.29	11일 지연
○○○	○○○○○○	2023.04.21	2023.01.21	2023.01.26	5일 지연
○○○	○○○○○○	2023.05.18	2023.02.18	2023.03.07	17일 지연
○○○	○○○○○○	2023.08.26	2023.05.26	-	통보누락
○○○	○○○○○○	2023.08.31	2023.05.31	2023.06.02	2일 지연
○○○	○○○○○○	2023.11.02	2023.08.02	2023.08.02	여
○○○	○○○○○○	2023.11.30	2023.08.30	2023.09.12	13일 지연
○○○	○○○○○○	2024.01.22	2023.10.22	2023.10.23	1일 지연
○○○	○○○○○○	2024.01.27	2023.10.27	2023.10.27	여
○○○	○○○○○○	2024.01.28	2023.10.28	2023.10.30	2일 지연
○○○	○○○○○○	2024.02.16	2023.11.16	2023.11.22	6일 지연
○○○	○○○○○○	2024.03.02	2024.12.02	2023.12.11	9일 지연
○○○	○○○○○○	2024.04.19	2024.01.19	2024.01.11	여
○○○	○○○○○○	2024.10.12	2024.07.12	2024.07.04	여
○○○	○○○○○○	2024.10.18	2024.07.18	2024.07.16	여
○○○	○○○○○○	2024.10.24	2024.07.24	2024.07.16	여

[지 적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수는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진단(판정)기한 3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청문일까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등록 취소 예정임을 알리는 등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구이면에서는 장애정도 재판정(진단) 대상자 15명에 대하여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는 재판정 안내(통보)를 최장 35일 지연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이면에서는 장애정도 재판정(진단) 대상자에 대한 통보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